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91
----------	-------

발의연월일 : 2026. 8. 14.

발 의 자 : 김현정 · 박상혁 · 김한규
강준현 · 안도걸 · 양부남
박홍배 · 장종태 · 곽상언
정일영 · 복기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벤처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5년 개정되었음.

그러나 벤처투자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

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4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행위제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

나. 투자계약에서 정한 진술과 보장 사항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라. 투자계약에 반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5조의2(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행위제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투자계약에 따라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제3자가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 <u>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투자의 효력을 발생하게 한 경우</u>

[illegible]

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② · ③ (생략)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u>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